

## 마포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

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,  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」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 구립  
어린이집 신규위탁 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0. 1. 2.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

### 1. 위탁대상 시설

| 시설명             |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설현황       |    | 정원(명)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-------|----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면적<br>(㎡) | 층수 |       |    |
| 신촌그랑자이<br>어린이집  | 마포구 대흥동 12<br>신촌그랑자이 관리동(대흥동)          | 581.4      | 2층 | 70    |    |
| 서교동<br>청년주택어린이집 | 마포구 서교동 395-43<br>서교동 청년주택 1층<br>(서교동) | 455.4      | 1층 | 60    |    |

※ 중복지원 불가 (어린이집 1개소만 지원 가능, 지원 후 위탁대상시설 변경 불가)

### 2. 위탁기간 : 5년

가. 신촌그랑자이어린이집 : 2020. 4. 1. ~ 2025. 3. 31.(예정)

나. 서교동청년주택어린이집 : 2020. 5. 1. ~ 2025. 4. 30.(예정)

### 3. 신청자격

가. 법인 및 단체 :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·  
비영리법인 · 단체, 서울시 소재 학교법인

나. 개 인 :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「영유아보육법」  
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 제1항 및  
동법 시행령 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

## 4. 신청자격 제외대상

가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6조(결격사유) 및 제20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

- 1)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
  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2.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
  3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
  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. 다만,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7.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8.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9.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2)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
- 3)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나. 최근 5년 이내에 관계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

다. 법인·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,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·단체  
라.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려는 자

마. 위탁운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

바. 최근 5년 이내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, 마포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중도 포기한 자

사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·단체 및 개인

## 5. 공고 및 신청서 접수

가. 공고기간 : 2020. 1. 2.(목) ~ 2020. 1. 22.(수)

나. 접수기간 : 2020. 1. 15.(수) ~ 2020. 1. 22.(수) 18:00까지(단, 공휴일 및 토요일일 제외)

다. 접수장소 : 마포구청 여성가족과(11층)

라. 접수방법 : 근무 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(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함)

마. 제출서류

| 구 분  | 서 류 항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운영체 |    |    | 비고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|----|----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인  | 단체 | 개인 |    |
| 개별사항 | ·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(법인 인감증명 붙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|    |    |    |
|      | ·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○  |    |    |
|      | ·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| ○  |    |    |
|      | · 주민등록등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| ○  |    |
| 공동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<u>어린이집 위탁신청서</u></li><li>· <u>대표자·원장 관련 서류</u> : 이력서, 자기소개서(등록기준지 기재 要), 학력 및 경력증명서, 원장 자격증, 주민등록등본, 원장 채용신체검사서 각 1부</li><li>· <u>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(자산현황)</u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부동산(등기부등본 등), 동산(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)</li><li>- <u>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, 부채증명서(해당시)</u></li><li>- 법인(법인명의 재산), 단체(단체명의 재산), 개인(부부의 경우 재산 구분 표기)<br/>※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% 인정</li></ul></li><li>· 위탁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및 수탁운영 취지서</li><li>· 어린이집 운영계획서(<u>취약보육 2개이상 실시 포함</u>) 및 예산서</li><li>· 기타 어린이집별로 필요한 추가 서류 등</li></ul> |     |    |    |    |

※ 신청서등 서식 다운로드 : 마포구 홈페이지(<http://www.mapo.go.kr>) “고시공고”란

바. 제출부수 :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**18부** 제출  
(원본 1부, 사본 17부)

※ 제출서류는 반드시 “스프링 제본”과 “양면인쇄(쪽수표시)”, “리벨”을 부착하고 “100페이지 이내” 작성

※ “구립어린이집 신규위탁체 선정 제출자료” 순서와 형식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변경 금지

※ PPT자료 및 신청서 요약자료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(담당자 이메일 주소 : [leeyj08@mapo.go.kr](mailto:leeyj08@mapo.go.kr))  
사. **유의사항 : 접수 후 제출내용 변경 불가**

**6. 사업설명회** :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이 공고내용 및 신청서 접수 시 설명으로 갈음함

## 7. 위탁조건

가. 위탁범위 :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시설 관리 전반

나.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,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

다.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,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보육사업안내 및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」, 어린이집 운영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행하지 않을 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」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취소

라. 계약체결일 이후 원장이 타 어린이집의 대표(실질적 소유자, 운영자 포함)가 아니어야 함  
마. 위탁기간 내 원장 만65세 도래 시 1개월 전 새로운 원장으로 변경(임용)해야 함  
바. 원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임면 관련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름

사.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(영아·장애아·시간연장·다문화아동 보육) 중 2개 이상 실시해야 함. 특히 위탁기간 내에 구에서 권장하는 취약보육에 대해 우선 실시하여야 함.

아. 위탁체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종사자 임용을 금지함

자.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『어린이집 운영 위탁계약서』에 의함

## 8.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

가. 선정방법 : 마포구보육정책위원회 서면·면접 심사 후 선정

※ 신청자(대표자, 원장)는 심사일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설명(10분 이내 PPT발표) 후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. (※ 심사일은 별도 통지)

※ 심사에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

나. 심사항목 및 배점

- 어린이집 운영계획(40점),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(35점),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(10점), 운영체의 공신력(10점), 운영체의 재정능력(5점)

다. 심사결정

-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·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위탁운영체로 결정

(단, 평균 70점 이상의 위탁체가 없는 경우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결정함)

- 결과 점수가 동점으로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, 원장의 전문성, 시설 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
- 선정된 위탁체가 위탁포기·부정·거짓·기타 등의 사유로 선정이 취소가 되었을 경우, 평균 70점 이상을 받은 신청자 중 차순위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함

라. 선정결과 통지 :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선정결과 구 홈페이지 게시

마. 위탁신청자가 단독일 경우 재공고하고,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 심사를 통해 결정

바. 위탁심사일로부터 30일 내에 위탁계약 체결

## 9. 기타사항

- 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 후 열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
- 나.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심의 제외 및 선정을 무효로 한다.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자는 위탁기간동안 지원되는 보조금의 20%에 달하는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
- 라.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운영체 선정을 무효로 함
- 마.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
- 바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여성가족과(☎ 3153-8903)로 문의바람.